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1호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64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rhdchfhd@korea.kr

붙임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

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